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나471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3 선고 2022나47100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2. 3. 3 선고 2020가단33187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광필

변론종결 2022. 12. 16.

판결선고 2023. 1. 13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. 3. 3. 선고 2020가단33187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16. 2. 2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48,830,1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8,830,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 내지 21행의 “016. 2. 20.”을 “2016. 2. 20.”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).

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윤정, 판사 이재희, 판사 권현영

별지